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199
----------	------

2020년 2월 24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10월 17일, 김정환 의원 외 10명 발의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0년 2월 24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정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『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』 별표1 제1호자목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전('19. 7. 2.)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,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('19. 7. 2.)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### 가. 개요

- 2019년 1월 3일, 『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』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, 부칙1)에 평가서제출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.

이에 본 조례안은 별표 1 제1호자목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행('19.7.2)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및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확대 배경 및 적용 대상 시기

-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(강화)화하고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대상사업간 형평성 문제2) 해소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$m^2$  이상의 건축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('19.1.3 시행).

#### <조례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변경 내용>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대상사업의 범위	『건축법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$m^2$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(단독주택) 및 제2호(공동주택)에 따른 건축물 제외	『건축법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$m^2$ 이상인 것
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	『건축법』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	

1) 부칙<제6984호, 2019. 1. 3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)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의 포함 여부에 대한 혼선이 있었고, 동일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공동주택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.

- 다만, 개정 조례 시행일('19.7.2) 이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였지만,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음.

이는 동 조례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(제1호자목)가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<sup>3)</sup>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, 2016년 민원인 질의에서도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변<sup>3)</sup>한 바 있음.

이와 같은 판단하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<sup>4)</sup>에서도 2019년 7월 2일까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(승인등)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,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도 공문을 통해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.

<본 조례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회 검토 의견>

구분	내용
제목	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의 건
수신자(경유)	서울특별시의회 의장(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)
일시	2019. 11. 1
내용	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정할 때는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 시행일('19. 7. 3) 이전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까지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3) 환경정책과016296('16.9.30)

4)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 협조요청(환경정책과-395)

## 2) 경과 사항

-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공문 시행 이후 당초 개정 조례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조례 문구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이전 공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2019년 7월 4일, 10월 4일 시행한 바 있음.

이로 인해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기된 상태임.

## 3)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

- '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이 당초 조례 개정 취지 및 '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 내용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등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,

사업 대상 기준일이 이미 5개월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급 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점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함.

- 「헌법」 제13조제2항에서 “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”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급입법이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임.

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취지 및 지역주민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,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내 주민이 갖는 환경권(법률상 이익)에 대한 침해 유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,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8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9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4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서,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별표 1 제1호자목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)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

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 규정은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의 시행일 이전('19. 7. 2.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</p>	<p><u>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6984호, 2019.1.3.&gt;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 시행일('19. 7. 3.) 전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을 적용한다.</u></p>